|  |  |  |
| --- | --- | --- |
| **행정계약 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법석[2019]17호  <행정계약 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 2019년 11월 12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781차 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하는 바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9년 11월 27일  행정계약 사건을 법에 의거하여 적시에 공정하게 심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등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심판 업무의 실천과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1. 행정기관이 행정관리 또는 공공서비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 협상을 거쳐 체결하는 행정법상의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1)호에 규정한 행정계약에 속한다. 2.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다음 각 호의 행정계약으로 인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3. 정부특허경영계약 4. 토지•건물 등의 징수•징용에 대한 보상계약 5. 광업권 등 국유자연자원 사용권 출양계약 6. 정부가 투자한 보장형 주택 임대•매매 등 계약 7. 이 규정 제1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정부와 사회자본의 합작계약 8. 기타 행정계약 9. 행정기관이 체결한 다음 각 호의 계약으로 인해 제기되는 소송은 인민법원의 행정소송 사건 접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10. 행정기관 간에 체결된 공무 협조 등 사유로 인한 계약 11. 행정기관 및 그 직원 간에 체결된 노동인사계약 12. 행정계약의 체결•이행•변경•종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원고의 신분으로 행정기관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조직이 체결한 행정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위탁한 행정기관을 피고로 한다.   1. 행정계약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2. 입찰, 경매, 공매(掛牌) 등 경쟁성 활동에 참여한 자로, 행정기관이 응당히 법에 따라 그와 행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행정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거나 행정기관이 타인과 체결한 행정계약이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3. 징수•징용보상계약이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피징수•피징용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용익물권자, 공유주택(公房) 임차인 4. 행정계약의 체결•이행•변경•종료 등 행위가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기타 공민, 법인 또는 조직 5. 인민법원이 행정계약 사건을 접수한 후 피고가 해당 계약의 체결•이행•변경•종료 등에 관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6. 당사자가 서면계약에 피고 소재지, 원고 소재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목적물 소재지 등 쟁의와 실질적 연관성이 있는 지역의 인민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약정에 따라야 한다. 단, 급별(級別)관할 및 전속(專屬)관할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효력을 발생한 법률문서에 의해 사건 관련 계약이 행정계약에 해당됨을 이유로 불입안(不予立案) 또는 소송 기각 재정(裁定)이 내려졌고 당사자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8. 행정계약 사건에서 행정소송법 제49조 제(3)호에 규정한 ‘구체적인 소송청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지칭한다. 9. 행정기관의 행정계약을 변경•해제하는 행정행위 취소 또는 해당 행정행위의 위법성   확인 청구   1. 행정기관의 법에 따른 계약 이행 또는 행정계약에 약정한 의무 이행 청구 2. 행정계약의 효력 확인 청구 3. 행정기관의 법 또는 약정에 따른 행정계약 체결 청구 4. 행정계약의 취소•해제 청구 5. 행정기관의 배상 또는 보상 청구 6. 행정계약의 체결•이행•변경•종료 등에 관한 기타 소송청구 7. 피고는 자신의 법정(法定) 직권 보유, 법정(法定) 절차 이행, 해당 법정(法定) 직책 이행 및 행정계약 체결•이행•변경•해제 등 행위의 합법성에 대한 거증책임을 부담한다.   행정계약의 취소•해제를 주장하는 원고는 행정계약 취소•해제 사유에 대한 거증책임을 부담한다.  행정계약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쟁의가 발생한 경우 이행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거증책임을 부담한다.   1. 인민법원은 행정계약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피고의 행정계약 체결•이행•변경•해제 행위에 대하여 법정(法定) 직권 보유 여부, 직권 남용 여부, 법률•법규 적용 정확 여부, 법정(法定) 절차 준수 여부, 현저히 부당 여부, 해당 법정(法定) 직책 이행 여부의 합법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피고가 법 또는 약정에 따라 행정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의 소송청구에 기하여 피고의 해당 의무 유무 또는 해당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행정계약에 행정소송법 제75조에 규정한 중대하고 현저한 위법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계약의 무효를 확인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민사 법률규범을 적용하여 행정계약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정계약의 무효 사유가 1심 법정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소멸된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계약의 유효를 확인할 수 있다.   1. 법률•행정법규에 기타 기관의 비준 등 절차를 거친 후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한 행정계약으로 1심 법정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비준을 득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계약의 효력 미발생을 확인하여야 한다.   행정계약에 피고가 비준 절차 이행 등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으로 인해 원고가 피고의 배상책임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요구를 지지하여야 한다.   1. 원고가 협박, 사기, 중대 오해, 현저한 불공평 등을 사유로 행정계약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인민법원이 심리를 거쳐 법률에 규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내린 경우 법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 행정계약의 무효, 취소, 효력 미발생 확인 후 당사자가 행정계약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인민법원은 반환 판결을 내려야 한다.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환산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피고의 원인으로 행정계약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행정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와 더불어 피고의 구제조치를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원고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1. 행정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이익•사회공공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으로 인해 피고가 계약을 변경•해제하는 행정행위를 행한 후 원고가 해당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인민법원이 심리를 거쳐 해당 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한 경우 원고의 소송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원고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피고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피고가 행정계약을 변경•해제하는 행정행위를 행함에 있어 행정소송법 제70조에 규정한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행정행위의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며 이와 더불어 피고에게 행정행위를 다시 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의 행정계약을 변경•해제하는 행정행위의 위법성이 확인된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소송법 제78조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계약의 이행, 구제조치를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원고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피고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다.   1. 원고의 행정계약 해제 청구에 대하여 인민법원이 약정 또는 법정(法定)의 해제 사유에 해당되고 국가이익•사회공공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가 가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을 내린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 당사자가 민사 법률규범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3. 피고가 법 또는 약정에 따라 행정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소송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원고의 소송청구와 결부시켜 피고에게 계약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내리고 구체적인 이행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다. 피고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이행이 실질적 의미가 없을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상응하는 구제조치를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원고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피고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다.   원고가 계약상의 위약금 조항 또는 계약금(定金) 조항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요구를 지지하여야 한다.   1. 피고가 명확한 의사표시 또는 자신의 행위로 행정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원고가 이행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위약책임 부담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2. 피고 또는 기타 행정기관이 국가이익•사회공공이익의 수요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행정직권을 행사함에 있어 원고의 이행불능, 이행비용의 현저한 증가 또는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의 보상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3. 원고가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인민법원에 피고의 위약책임 부담을 청구하였고 인민법원이 심리를 거쳐 행정계약이 무효하다고 판단을 내린 경우 응당히 원고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원고가 변경한 소송청구에 근거하여 행정계약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피고의 행위로 인해 행정계약의 무효가 초래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피고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의 설명이 있은 후 원고가 소송청구의 변경을 거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의 소송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4. 인민법원은 행정계약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법에 의거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조정 시 자발성•합법성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국가이익•사회공공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계약의 약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최고를 한 후에도 여전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그의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서면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서면결정을 받은 후 법정(法定) 기한 내에 행정재심사를 신청하지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도 의무를 이행하지도 아니하였고 계약의 내용이 여전히 집행성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상 행정기관이 행정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감독할 직권이 있고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약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최고를 한 후에도 여전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처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해당 처리결정을 받은 후 법정(法定) 기한 내에 행정재심사를 신청하지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도 의무를 이행하지도 아니하였고 계약의 내용이 여전히 집행성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1. 행정기관이 법 또는 약정에 따라 행정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시효는 민사 법률규범을 참조하여 확정한다. 행정기관의 행정계약 변경•해제 등 행정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 제기 기한은 행정소송법 및 그 사법해석에 따라 확정한다. 2. 행정계약에 중재조항을 약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조항의 무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법률•행정법규 또는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인민법원은 행정계약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행정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참조하고 적용한다.   인민법원은 행정계약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민사 법률규범의 민사계약 관련 규정을 참조하고 적용할 수 있다.   1. 2015년 5월 1일 후에 체결된 행정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행정소송법 및 이 규정을 적용한다.   2015년 5월 1일 전에 체결된 행정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그 당시의 법률•행정법규 및 사법해석을 적용한다.   1.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이 그 이전에 발표한 사법해석이 이 규정과 불일치한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  | **最高人民法院**  **关于审理行政协议案件若干问题的规定**  法释〔2019〕17号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行政协议案件若干问题的规定》已于2019年11月12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781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20年1月1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2019年11月27日  为依法公正、及时审理行政协议案件，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等法律的规定，结合行政审判工作实际，制定本规定。  **第一条** 行政机关为了实现行政管理或者公共服务目标，与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协商订立的具有行政法上权利义务内容的协议，属于行政诉讼法第十二条第一款第十一项规定的行政协议。  **第二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就下列行政协议提起行政诉讼的，人民法院应当依法受理：  （一）政府特许经营协议；  （二）土地、房屋等征收征用补偿协议；  （三）矿业权等国有自然资源使用权出让协议；  （四）政府投资的保障性住房的租赁、买卖等  协议；  （五）符合本规定第一条规定的政府与  社会资本合作协议；  （六）其他行政协议。  **第三条** 因行政机关订立的下列协议提起诉讼的，不属于人民法院行政诉讼的受案范围：  （一）行政机关之间因公务协助等事由而订立的协议；  （二）行政机关与其工作人员订立的劳动人事协议。  **第四条** 因行政协议的订立、履行、变更、终止等发生纠纷，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作为原告，以行政机关为被告提起行政诉讼的，人民法院应当依法受理。  因行政机关委托的组织订立的行政协议发生纠纷的，委托的行政机关是被告。  **第五条** 下列与行政协议有利害关系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提起行政诉讼的，人民法院应当依法受理：  （一）参与招标、拍卖、挂牌等竞争性活动，认为行政机关应当依法与其订立行政协议但行政机关拒绝订立，或者认为行政机关与他人订立行政协议损害其合法权益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  （二）认为征收征用补偿协议损害其合法权益的被征收征用土地、房屋等不动产的用益物权人、公房承租人；  （三）其他认为行政协议的订立、履行、变更、终止等行为损害其合法权益的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  **第六条** 人民法院受理行政协议案件后，被告就该协议的订立、履行、变更、终止等提起反诉的，人民法院不予准许。  **第七条** 当事人书面协议约定选择被告所在地、原告所在地、协议履行地、协议订立地、标的物所在地等与争议有实际联系地点的人民法院管辖的，人民法院从其约定，但违反级别管辖和专属管辖的除外。  **第八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向人民法院提起民事诉讼，生效法律文书以涉案协议属于行政协议为由裁定不予立案或者驳回起诉，当事人又提起行政诉讼的，人民法院应当依法受理。  **第九条** 在行政协议案件中，行政诉讼法第四十九条第三项规定的“有具体的诉讼请求”是指：  （一）请求判决撤销行政机关变更、  解除行政协议的行政行为，  或者确认该行政行为违法；  （二）请求判决行政机关依法履行  或者按照行政协议约定履行义务；  （三）请求判决确认行政协议的效力；  （四）请求判决行政机关依法或者  按照约定订立行政协议；  （五）请求判决撤销、解除行政协议；  （六）请求判决行政机关赔偿或者补偿；  （七）其他有关行政协议的订立、  履行、变更、终止等诉讼请求。  **第十条** 被告对于自己具有法定职权、履行法定程序、履行相应法定职责以及订立、履行、变更、解除行政协议等行为的合法性承担举证责任。  原告主张撤销、解除行政协议的，对撤销、解除行政协议的事由承担举证责任。  对行政协议是否履行发生争议的，由负有履行义务的当事人承担举证责任。  **第十一条** 人民法院审理行政协议案件，应当对被告订立、履行、变更、解除行政协议的行为是否具有法定职权、是否滥用职权、适用法律法规是否正确、是否遵守法定程序、是否明显不当、是否履行相应法定职责进行合法性审查。  原告认为被告未依法或者未按照约定履行行政协议的，人民法院应当针对其诉讼请求，对被告是否具有相应义务或者履行相应义务等进行审查。  **第十二条** 行政协议存在行政诉讼法第七十五条规定的重大且明显违法情形的，人民法院应当确认行政协议无效。  人民法院可以适用民事法律规范确认行政协议无效。  行政协议无效的原因在一审法庭辩论终结前消除的，人民法院可以确认行政协议有效。  **第十三条** 法律、行政法规规定应当经过其他机关批准等程序后生效的行政协议，在一审法庭辩论终结前未获得批准的，人民法院应当确认该协议未生效。  行政协议约定被告负有履行批准程序等义务而被告未履行，原告要求被告承担赔偿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十四条** 原告认为行政协议存在胁迫、欺诈、重大误解、显失公平等情形而请求撤销，人民法院经审理认为符合法律规定可撤销情形的，可以依法判决撤销该协议。  **第十五条** 行政协议无效、被撤销或者确定不发生效力后，当事人因行政协议取得的财产，人民法院应当判决予以返还；不能返还的，判决折价补偿。  因被告的原因导致行政协议被确认无效或者被撤销，可以同时判决责令被告采取补救措施；给原告造成损失的，人民法院应当判决被告予以赔偿。  **第十六条** 在履行行政协议过程中，可能出现严重损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的情形，被告作出变更、解除协议的行政行为后，原告请求撤销该行为，人民法院经审理认为该行为合法的，判决驳回原告诉讼请求；给原告造成损失的，判决被告予以补偿。  被告变更、解除行政协议的行政行为存在行政诉讼法第七十条规定情形的，人民法院判决撤销或者部分撤销，并可以责令被告重新作出行政行为。  被告变更、解除行政协议的行政行为违法，人民法院可以依据行政诉讼法第七十八条的规定判决被告继续履行协议、采取补救措施；给原告造成损失的，判决被告予以赔偿。  **第十七条** 原告请求解除行政协议，人民法院认为符合约定或者法定解除情形且不损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和他人合法权益的，可以判决解除该协议。  **第十八条** 当事人依据民事法律规范的规定行使履行抗辩权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十九条** 被告未依法履行、未按照约定履行行政协议，人民法院可以依据行政诉讼法第七十八条的规定，结合原告诉讼请求，判决被告继续履行，并明确继续履行的具体内容；被告无法履行或者继续履行无实际意义的，人民法院可以判决被告采取相应的补救措施；给原告造成损失的，判决被告予以赔偿。  原告要求按照约定的违约金条款或者定金条款予以赔偿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二十条** 被告明确表示或者以自己的行为表明不履行行政协议，原告在履行期限届满之前向人民法院起诉请求其承担违约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二十一条** 被告或者其他行政机关因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的需要依法行使行政职权，导致原告履行不能、履行费用明显增加或者遭受损失，原告请求判令被告给予补偿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二十二条** 原告以被告违约为由请求人民法院判令其承担违约责任，人民法院经审理认为行政协议无效的，应当向原告释明，并根据原告变更后的诉讼请求判决确认行政协议无效；因被告的行为造成行政协议无效的，人民法院可以依法判决被告承担赔偿责任。原告经释明后拒绝变更诉讼请求的，人民法院可以判决驳回其诉讼请求。  **第二十三条** 人民法院审理行政协议案件，可以依法进行调解。  人民法院进行调解时，应当遵循自愿、合法原则，不得损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和他人合法权益。  **第二十四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未按照行政协议约定履行义务，经催告后不履行，行政机关可以作出要求其履行协议的书面决定。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收到书面决定后在法定期限内未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且仍不履行，协议内容具有可执行性的，行政机关可以向人民法院申请强制执行。  法律、行政法规规定行政机关对行政协议享有监督协议履行的职权，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未按照约定履行义务，经催告后不履行，行政机关可以依法作出处理决定。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在收到该处理决定后在法定期限内未申请行政复议或者提起行政诉讼，且仍不履行，协议内容具有可执行性的，行政机关可以向人民法院申请强制执行。  **第二十五条**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对行政机关不依法履行、未按照约定履行行政协议提起诉讼的，诉讼时效参照民事法律规范确定；对行政机关变更、解除行政协议等行政行为提起诉讼的，起诉期限依照行政诉讼法及其司法解释确定。  **第二十六条** 行政协议约定仲裁条款的，人民法院应当确认该条款无效，但法律、行政法规或者我国缔结、参加的国际条约另有规定的除外。  **第二十七条** 人民法院审理行政协议案件，应当适用行政诉讼法的规定；行政诉讼法没有规定的，参照适用民事诉讼法的规定。  人民法院审理行政协议案件，可以参照适用民事法律规范关于民事合同的相关规定。  **第二十八条** 2015年5月1日后订立的行政协议发生纠纷的，适用行政诉讼法及本规定。  2015年5月1日前订立的行政协议发生纠纷的，适用当时的法律、行政法规及司法解释。  **第二十九条** 本规定自2020年1月1日起施行。最高人民法院以前发布的司法解释与本规定不一致的，适用本规定。 |